

## 부속서 10-가

### 중재절차 규칙

#### 정의

##### 1. 이 장의 목적상,

**자문인**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게 자문하거나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.

**보조인**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. 그리고

**당사국의 대표자**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 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모든 인을 말한다.

#### 행정 운영

##### 2.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,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,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.

#### 통보

##### 3.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에 의하여 전달되는 모든 요청, 통보,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, 등기우편, 쿠리어, 모사전송, 텔레스, 전신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.

##### 4.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.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.

5.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통상부에 각각 전달된다.

6.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, 통보,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.

7. 문서 전달 마감일<sup>1</sup>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.

#### 최초 입장

8.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.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.

#### 중재패널의 운영

9.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.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10.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중재패널은 전화,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.

11.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,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.

---

<sup>1</sup>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,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다.

12.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, 위임되지 않는다.

13. 이 장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,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,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.

14.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,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게 알린다.

15.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를 것이다.

## 심리

16.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최소한 한 번의 심리가 개최된다.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.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,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. 이 부속서 제2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공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,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.

17.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.

18.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.

19. 당사국의 대표자, 당사국의 자문인, 전문가, 행정 인력, 통역사, 번역사, 법원서기,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공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.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,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게 발언할 수 있다.

20.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이나 발언을 할 인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, 자문인,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.

21. 중재패널의 심리는 공중에게 비공개된다.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공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.

22. 중재패널은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게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면서 다음의 방식으로 심리를 수행한다.

#### 주장

가. 제소 당사국의 주장, 그리고

나. 피소 당사국의 주장

#### 반박 주장

가. 제소 당사국의 답변, 그리고

나. 피소 당사국의 반박 답변

23.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라도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.

24.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,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.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,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.

25.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.

## 서면 질문

26.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라도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.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게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.

27.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. 각 당사국은 접수일부터 7일 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.

## 일방적 의사소통

28.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.

29.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.

## 기술적 조언 요청에 의한 기한 정지

30.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하여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.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,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하여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.

31.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,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게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.

## 외부조언자의 입장

32.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3일 내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자발적인 서면입장을 접수할 수 있다. 다만, 그 서면입장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부터 10일 내에 제출되고, 간결하며, 어떠한 경우에도 부속서를 포함하여 15쪽보다 더 길지 않아야 하고,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실적 및 법적인 문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.

33. 제32항에 언급된 입장은 자연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활동 성격 및 자금조달 출처를 포함하여 그 입장을 제출하는 인에 대한 기술을 포함하고, 그 인의 국적 또는 설립 장소 및 그 인이 중재절차에서 가지는 이해관계의 성격을 명시한다. 그 서면입장은 제35항에 따른 공동 작업언어로 작성된다.

34. 중재패널은 자신이 접수했던 제32항 및 제33항에 부합하는 모든 입장을 자신의 판정에 목록화한다. 중재패널은 그러한 입장에서 제기된 주장을 자신의 판정에서 다루도록 강제되지 않는다. 제32항부터 제34항까지에 따라 중재패널이 획득한 모든 입장은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에 제출된다.

## 번역 및 통역

35. 제10.5조에 언급된 협의 동안, 그리고 이 부속서 제9항에서 언급된 회의 전에,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,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.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,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진다.

36.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.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,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.

## 기한 계산

37.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,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.

38. 제7항의 이행을 이유로,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,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기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기산된다.

## 그 밖의 절차

39. 제10.14조 제3항 및 제4항 그리고 제10.15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,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내에 전달하고, 피소 당사국은 최초로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.

40. 제10.14조 및 제10.15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 작성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, 적절한 경우,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 전달 기한을 정한다.

41.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, 이 부속서는 제10.14조 및 제10.15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.